##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69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이헌승·김선교·김도읍

강선영 • 이성권 • 서일준

서지영 · 박성훈 · 김승수

유용원 • 박덕흠 • 고동진

정성국 · 윤상현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독신자숙소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않는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이 1995년 이후 월 8만원으로 동결되어 실질적으로 주거비용 보전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을 개선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하여 이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거보조비(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정하여 제공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	
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주거보조비(제1호 또는 제2
	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제공반
	지 못한 군인에 한정하여 제
	<u> 공한다)</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